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 특례 신설〉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10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피치료감호자자녀 지원의 특례 신설	2
2. 정책적 검토사항	4
3. 체계·자구적 검토사항	10
※ 참고자료	13
참고자료 1	13
참고자료 2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 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26.
3. 회 부 일 : 2024. 8.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최근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피치료감호자자녀 지원의 특례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50조의3(피치료감호자자녀 지원의 특례) ① 피치료감호자의 미성년 자녀(이하 이 조에서 “피치료감호자자녀”라 한다)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2조·제53조 및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용자”를 “피치료감호자”로, “수용자자녀”를 “피치료감호자자녀”로, “소장”을 “치료시설의 장”으로 본다. 1. 부 또는 모가 피치료감호자인 경우(부모 모두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모가 이닌 친족이 양육하는 경우에 그 양육자가 피치료감호자인 경우

- 개정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208호)의 의결을 전제¹⁾로 「형집행법」상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규정을 준용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현행 「형집행법」과 앞의 동 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① 제41조(접견), ②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③ 제53조(유아의 양육), ④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⑤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 등), ⑥ 제53조의4(비밀유지 의무)를 준용하고 있음(참고자료1).

또한, 준용되는 조항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준용 조항의 각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꿔주어야 하므로, 「형집행법」과 「치료감호법」의 주체·객체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수용자”를 “피치료감호자”로, “수용자자녀”를 “피치료감호자자녀”로, “소장”을 “치료시설의 장”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1) 개정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3조 및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현재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08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해당 법률안의 심사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적 검토사항

- 개정안은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미성년 자녀가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모성보호 및 피치료감호자 자녀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치료감호시설 수용에 따라 피치료감호자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적절한 보호·양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감제도에 적용되는 「형집행법」을 치료감호제도에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준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조정하거나 치료감호제도의 특성에 맞게 「치료감호법」이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① 우선, 준용되는 「형집행법」 안 제41조(집견) 및 제53조(유아의 양육)와 관련하여, 치료감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²⁾ 특히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임.

2) 「치료감호법」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飲)·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국립법무병원 수용자 통계〉

구분	2020	2021	2022	2023
총계	1,016	863	798	792
1호(심신장애)	935	797	727	732
2호(약물중독등)	25	22	30	29
3호(정신성적장애)	56	44	41	31

〈병명별 수용현황〉

(단위: 명, %)

총계	조현병	지적발달장애	정신적장애	조울증	망상장애	알코올	약물(마약등)	인격장애	뇌전증	충동조절장애	기타
795	470	52	28	77	44	34	27	10	4	9	40
100%	59.1	6.6	3.5	9.7	5.5	4.3	3.4	1.3	0.5	1.1	5.0

개정안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자가 미성년자와 접견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아닌 개방된 시설에서 하고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유아의 양육도 가능하게 되는데,

치료감호는 치료명령³⁾과 달리 사회에서 격리하여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정도로 심신장애 또는 중독 상태가 중증이어서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 선고되는 것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

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② 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치료감호법」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이 법에서 “치료명령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지 않은 장소에서 미성년 자녀와 접견하거나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피치료감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형집행법」 안 제53조제1항제2호4)에 따라 피치료감호자가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인정되어 양육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② 수감제도와 치료감호제도 간에 적용 대상인 인원 수의 차이가 커 상대적으로 치료감호시설 내 유아양육 제도의 효율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교정시설의 경우 총 56,577명 수감자 중, 여성 수형자는 2,991명이며, 임신부 및 양육유아는 2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수용인원, 여성 수형자, 임신부 및 양육유아〉⁵⁾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54,624	53,873	52,368	51,117	56,557
여성수형자	2,313	2,345	2,436	2,605	2,991
임산부 및 양육유아	19	18	21	26	22
임산부	8	9	12	14	9
양육유아	11	9	9	12	13

4) 「형집행법」 개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208호)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보호자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36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5) 자료: 2024 교정통계연보

반면, 치료감호시설의 경우 2024년 10월 현재 피치료감호자 792명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피치료감호자는 42명인데, 이 중 임신부나 시설 내 양육이 필요한 유아(생후 36개월 미만)의 수는 따로 조사하고 있지 않지만 교정시설의 통계에서 교정시설 수용인원과 임신부 및 양육유아 비율을 참고할 때 소수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개정안의 비용 대비 효과성 및 정책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 대상(임산부 및 36개월 미만 자녀) 인원 및 유아 양육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⁶⁾.

- ③ 「형집행법」 안 제53조의2⁷⁾에 따르면, 소장은 신입자에게 수용자 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제3항)하고, 「아동복지법」 제15조(참고자료2)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야(제4항) 함.

6) 국회예산정책처의 동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유아 양육,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는 경우 임신부 정기검진, 유아 양육을 위한 설비, 물품 지원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치료감호자 중 임신부 검진 대상자 수 및 평균 검진 비용, 유아 양육 신청자 수, 유아 양육 설비 설치 수량 및 물품 제공 수량, 설비 및 물품별 평균 비용, 미성년 자녀 지원 의뢰 건수 및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7) 「형집행법」 개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208호)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신입자에게 이 법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수용자가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및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 안내와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심신장애인 등은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 통지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으므로, 피치료감호자 또는 자녀의 대리인이거나 보호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

- ④ 치료감호시설과 교정시설 간 현황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국에는 55개⁸⁾의 교정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유아 양육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비교적 충분하고, 특히 2023년 특수기능별 교정시설로서 유아 양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천안개방교도소’가 신설되어 민간의 유아위탁시설과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



자료: 천안개방교도소 제공

반면, 현재 운영 중인 치료감호시설은 ‘국립법무병원’ 한 곳⁹⁾ 뿐이고 국립법무병원에는 유아 양육시설이 없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주로 중범죄자가 수용¹⁰⁾되는 치료감호시설의 폐쇄적인 특성과

8) 구치소 12개, 교도소 39개, 지소 3개, 민영교도소 1개

9) 현재 5개 국립병원(서울·춘천·공주·나주·부곡)을 법무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2020년 2. 22. 코로나19로 인해 국립부곡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 전원을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 조치한 뒤 2022. 12. 31. 국립부곡병원 내 사범병동을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국립법무병원 한 곳만 운영 중임.

10)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만한 경미한 범죄의 경우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치료명령을 선고할

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치료감호가 이용되지 못하는 현실¹¹⁾을 고려할 때, 유아 양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형집행법」 개정안 제53조의3에 따른 이송도 어려울 수 있음.

- 법무부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고 아동은 심신이 건강한 양육자의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양육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현행법상으로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집행법」을 준용하도록 규정¹²⁾하고 있어 별도의 준용 규정을 마련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수 있음.

「치료감호법」 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1) 세계일보, “정신질환 치료감호’ 하늘의 별따기... 대부분 방치”, 2024.10.29.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028514086?OutUrl=naver>

12) 「치료감호법」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체계·자구적 검토사항

○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형집행법」 개정안은 소장의 양육조사 및 지원 등 집행에 필요한 다수의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¹³⁾, 하위법령이랑 해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형식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무부령에는 수감제도의 특성에 맞는 내용이 규정될 것으로 보임.

「치료감호법」이 「형집행법」 개정안을 준용하고 있어서 위 법무부령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치료감호에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이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치료감호제도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3) 「형집행법」 개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208호)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신입자에게 이 법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수용자가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및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 안내와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 등) ①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경우 수용자자녀 주거지를 고려해 근거리 시설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이감을 지휘할 수 있고 소장은 위 이감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가 수용자를 접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형집행법」 개정안은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을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¹⁴⁾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이를 그대로 준용하면 피치료감호자자녀를 위한 이송도 법무부장관이 지휘하게 되는데, 이는 피치료감호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결정하도록 하는 현행법¹⁵⁾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형집행법」상 “소장”을 「치료감호법」상 “치료시설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치료감호법」에는 “치료시설의 장”이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
- 개정안은 “피치료감호자의 미성년 자녀”를 “피치료감호자자녀”로 약칭하고 있는데, 「형집행법」 개정안의 약칭인 “수용자자녀”는 단순히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아니라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¹⁶⁾, 개정안의 약칭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14) 「형집행법」 개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208호)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 등)
①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경우 수용자자녀 주거지를 고려해 근거리 시설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이감을 지휘할 수 있고 소장은 위 이감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5) 「치료감호법」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항

16) 「형집행법」 개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20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용자자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개정안은 피치료감호자자녀 지원의 특례 규정을 ‘제7장 보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보칙은 일반적으로 절차적·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반해, 피치료감호자자녀의 지원에 관한 것은 피치료감호자자녀의 처우를 규율하는 실체적인 내용이므로, 조문의 위치를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로 옮기는 것이 적절함. 참고로 「형집행법」 개정안은 수용자자녀 등의 특별한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제2편 제8장 ‘수용자의 처우’ 부분에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제53조제1항을 신설하는데, 안 제53조에는 제1항 외에 다른 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항”표시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문 의 처

02)6788-506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제3208호의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될 부분은 밑줄 표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수용자자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말한다.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3.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⑥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교정시설에서 태어난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보호자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36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신입자에게 이 법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수용자가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및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 안내와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 등) ①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경우 수용자자녀 주거지를 고려해 근거리 시설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이감을

지휘할 수 있고 소장은 위 이감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가 수용자를 접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비밀유지 의무)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

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

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